

##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전망

김 해 식 전문연구위원

### 1. 서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부채의 공정가치(fair value)에 대하여 그동안 제시된 현행유출가치(current exit value)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 보험부채 평가를 둘러싼 논의들을 되짚어 보고자 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up>1)</sup>는 보험부채가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2011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 IASB는 1997년 공정가치(FV: fair value)를 금융회계의 기본 틀로 삼아 기존의 금융회계기준(IAS39와 IAS32)을 정비하고, 일반 금융상품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IASB는 1999년 보험현안보고서를<sup>2)</sup> 통해 각국 사례와 이슈를 검토하고, 2001년 보험회계기준서 초안<sup>3)</sup>에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잠정안을 제시함.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정의됨.
    - 보험회사는 재보험사 등 제3자에게 계약을 이전할 경우를 가정하는 현행유출가치(CEV: current exit value)<sup>4)</sup> 개념에서 미래현금흐름을 파악하고 현재가치를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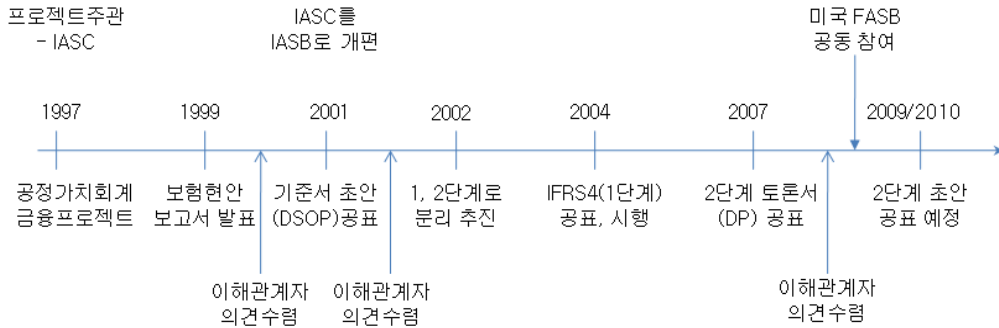
1) IASB는 기존의 비상임이사 체제(IASC)에서 2001년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한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로서 전환 이전에 제정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의 개정, 전환 이후 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제·개정하고 있음.

2) IASC, *Issues Paper on Insurance Contracts*, 1999.

3) IASB,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 (DSOP) - Insurance Contracts*,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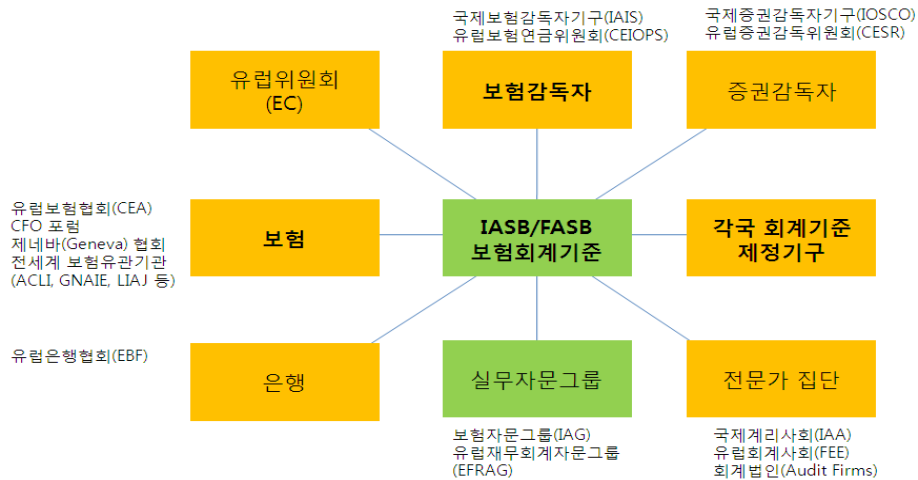
4) 현행가치(current value)란 역사적 원가 이외의 모든 가치를 의미하며, 이전가치(유출가치: exit value)는 거래가 활발한 시장에서는 판매가치(유입가치: entry value)와 동일.

<그림 1> 국제보험회계기준 프로젝트 추진 경과



-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그림 2> 참조) 간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면서 보험 계약의 정의 등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 기준(IFRS4)을 2004년에 우선 제정하고,<sup>5)</sup> 보험부채의 측정 기준은 제2단계에서 제시하기로 함.

<그림 2>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자료: Swiss Re, "The Impact of IFRS on the Insurance Industry", Sigma, 2004. 일부 수정

5) 국내에서 IFRS4는 K-IFRS 제1104호로서 채택되었으며, 동 기준은 2011년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으로서 현재의 보험회계처리준칙을 대체하게 됨.

□ 한편, 다국적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내재가치(embedded value)<sup>6)</sup> 공시 관행이 늘어나고 있고, 원칙중심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감독회계의 움직임도<sup>7)</sup> IFRS4 2단계 논의와 더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CFO 포럼(The European Insurance CFO Forum)의 내재가치 산출 기준은 2단계 토론서와 비교하여 현금흐름 반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다국적 보험회사들의 채택이 늘어나면서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국제적 관행으로 부상하고 있음.<sup>8)</sup>

○ 유럽보험감독자기구(CEIOPS: 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s)가 주도하고 있는 SolvencyII는 2단계 토론서와 입장을 같이하나, 신용등급을 부채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사안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

○ 한편, 미국 FASB도 공정가치에 대해서는 현행유출가치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으나(SFAS157), 리스크마진의 설정방식 등에서 2단계 토론서와 차이가 있음.

□ 현재 2단계 논의는 그동안 반대가 많았던 현행유출가치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논의하면서 IFRS4 2단계 기준의 완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sup>9)</sup>

○ 그동안 IASB가 주도하던 2단계 작업에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2008년 공동참여를 선언하면서 새 전기를 맞이함.

○ 실제로 2009년 7월 논의에서는 2001년 기준서 초안 발표 이후 2단계 토론서<sup>10)</sup>까지 유지되어 온 현행유출가치가 폐기되고 새로운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음.<sup>11)</sup>

□ 따라서 IFRS4 2단계 논의는 공정가치회계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세부 내용에서

---

6) 내재가치란 보유계약으로부터 기대되는 주주의 가치를 의미하며, 보험부채의 가치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함.

7) Hay, L. J., "Global Perspectives: Convergence or Divergence?", *Life Actuarial Insights*, KPMG, 2008.

8) 국내에서도 상장사인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투자자설명회(IR)를 통해 장기손해보험의 보유계약가치에 대한 내재가치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고, 비상장사인 생명보험회사들 중 일부 회사들도 내부관리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9) Milliman, "International Accounting Update - 3rd Quarter", 2008.

10) IASB, *Discussion Paper - Preliminary Views on Insurance Contracts*, 2007.

11) IASB/FASB의 보험프로젝트 2009년 7월 회의자료 참조(<http://www.iasb.org>)

보험산업의 회계관행을 반영하려는 변화가 보이므로 재무회계기준 제정기구, 감독자, 보험회사의 논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 2. IFRS4 2단계 토론회

IFRS4 2단계 토론회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구하고 여기에 불확실한 현금흐름에 대비한 리스크마진(risk margin)을 더한 값을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로 정의하고, 동 부채가 매기마다 일관되게 측정될 것을 요구함.

### 가. 보험회계관행과 공정가치 측정방식의 비교

- ☐ 현재의 보험회계관행은 보험계약에서 최초 설정한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기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보험부채를 인식하는 이연-매칭 회계 모형(DM: deferral and matching model)을 사용하고 있음.
  - 회계기간 동안 미경과된(unearned) 수익을 다음 회계기간으로 이연시키고, 수익 이연에 대응하여 준비금과 사업비 등의 관련 비용도 이연시켜 이익을 인식함.
  - 최초 가정이 전체 계약기간에 그대로 유지되므로(locked-in) 보험부채의 장부가치가 변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보험부채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에는 자산의 투자이익률 등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하고 있음.<sup>12)</sup>
  - 보험상품 설계 시 예상했던 가정과 실제치 간에 차이가 나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망률 등에 안전할증(safety margin)의 형태로 마진을 보수적으로 부가함으로써 보험부채가 리스크마진을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 그러나 2단계 토론회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험부채의 가치가 매기마다 평가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 부채와 자산의 가치 변동이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자산부채 회계모형(AL: asset-liability model)을 제시하고 있음.

12) 현행 국내 보험회계기준인 보험업회계처리준칙(16. 보험료결손 예상시 회계처리)은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회계연도말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보험료적립금 기말 잔액이 미래의 보험금부채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에 유입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즉 보험료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부채를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2단계 토론서는 자산은 물론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여 그 변동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바로 인식하므로 수익과 비용의 이연 과정을 거치지 않음.
- 그 결과, 보험회계관행과 대조적으로 손익의 상당부분이 보험상품 판매와 동시에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 때문에 보험산업에서는 공정가치회계가 보험 회사 손익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sup>13)</sup>

#### 예시 1. 보험회계관행과 공정가치회계(2단계 토론서)의 사례 비교<sup>14)</sup>

※ 예시를 위한 기본 가정

1. 20x1년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일시납보험료 100, 신계약비 20, 보험금은 4차년도에 60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료와 신계약비는 계약개시 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반면, 기타 현금흐름은 연도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2. 증권의 효력은 연간 평균인 연중(midpoint)에 개시된다고 가정
3. 자산운용이익률은 4%, 할인율은 3%로서 수익률곡선은 평평하다고 가정
4. 현행유출가치(CEV) 기준 리스크마진은 12로서 리스크는 2차년도에 1/3, 3차년도에 나머지 리스크의 1/2, 4차년도에는 모두 소멸될 것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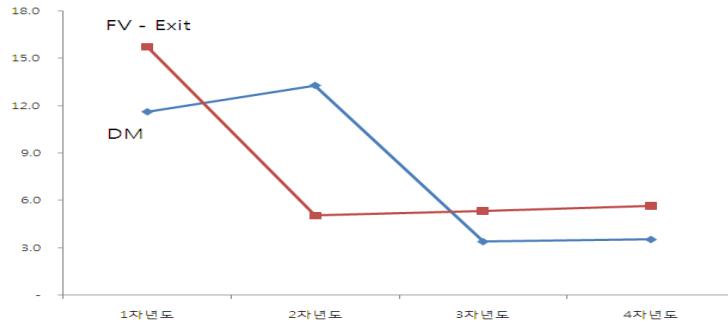
<표 1> 회계모형별 손익계산서 비교 예시

| 구분       | 회계관행(이연매칭모형: DM) |       |      |      |       | 2단계 DP(자산부채모형: Exit)2) |      |      |      |       |
|----------|------------------|-------|------|------|-------|------------------------|------|------|------|-------|
|          | 20x1             | 20x2  | 20x3 | 20x4 | 합계    | 20x1                   | 20x2 | 20x3 | 20x4 | 합계    |
| 보험료      | 100.0            |       |      |      | 100.0 | 100.0                  |      |      |      | 100.0 |
| 경과보험료    | 50.0             | 50.0  |      |      | 100.0 |                        |      |      |      |       |
| 준비금적립    | -30.0            | -30.0 |      |      | -60.0 | -54.1                  |      |      |      | -54.1 |
| 신계약비     | -10.0            | -10.0 |      |      | -20.0 | -20.0                  |      |      |      | -20.0 |
| 리스크마진    |                  |       |      |      |       | -10.8                  | 3.8  | 3.9  | 4.0  | 0.8   |
| 보험영업이익   | 10.0             | 10.0  |      |      | 20.0  | 15.1                   | 3.8  | 3.9  | 4.0  | 26.7  |
| 투자영업이익   | 1.6              | 3.3   | 3.4  | 3.5  | 11.8  | 1.6                    | 3.3  | 3.4  | 3.5  | 11.8  |
| 준비금증가액1) |                  |       |      |      |       | -0.8                   | -1.6 | -1.6 | -1.7 | -5.9  |
| 마진증가액1)  |                  |       |      |      |       | -0.2                   | -0.3 | -0.2 | -0.1 | -0.8  |
| 당기순이익    | 11.6             | 13.3  | 3.4  | 3.5  | 31.8  | 15.7                   | 5.1  | 5.4  | 5.7  | 31.8  |

주 : 1) 현재가치로 할인된 준비금과 미소멸리스크(마진)준비금의 시간에 따른 증가분  
2) 자산부채 회계모형 중 현행유출가치(current exit value)를 적용

- 13) 이기형 · 김해식,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CEO Report,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4. 참조
- 14) Murray et al., "Mind the GAAP: Fitch's View on Insurance IFRS", 2004.

**<그림 3> 회계모형별 이익 인식 비교 예시**



**<표 2> 회계모형별 대차대조표 비교 예시**

| 구분       | 회계관행(이연매칭모형: DM) |      |      |      | 2단계 DP(자산부채모형: Exit) |      |      |      |
|----------|------------------|------|------|------|----------------------|------|------|------|
|          | 20x1             | 20x2 | 20x3 | 20x4 | 20x1                 | 20x2 | 20x3 | 20x4 |
| 총자산      | 91.6             | 84.9 | 88.3 | 31.8 | 81.6                 | 84.9 | 88.3 | 31.8 |
| 운용자산     | 81.6             | 84.9 | 88.3 | 31.8 | 81.6                 | 84.9 | 88.3 | 31.8 |
| 이연신계약비   | 10.0             |      |      |      |                      |      |      |      |
| 부채 및 잉여금 | 91.6             | 84.9 | 88.3 | 31.8 | 81.6                 | 84.9 | 88.3 | 31.8 |
| 준비금      | 30.0             | 60.0 | 60.0 |      | 54.9                 | 56.6 | 58.3 |      |
| 미경과보험료   | 50.0             |      |      |      |                      |      |      |      |
| 리스크마진1)  |                  |      |      |      | 11.0                 | 7.5  | 3.9  |      |
| 잉여금      | 11.6             | 24.9 | 28.3 | 31.8 | 15.7                 | 20.8 | 26.1 | 31.8 |

주 : 1) 미소멸리스크(마진)준비금

- 2단계 토론서는 예상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을 보험부채와 분리하여 리스크마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상품 판매와 동시에 이익의 상당부분이 인식되는 구조를 제시함(예시 1. 참조).
- 이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익이 인식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청산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함.<sup>15)</sup>

## 나. 보험부채의 현재가치와 리스크마진

- 2단계 토론서는 보험부채를 거래하는 유통시장의 유동성이 낮고 거래가격 관찰이 쉽지 않기에 보험부채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추정치<sup>16)</sup>로서 현재가치를 제시함.
  - 2단계 토론서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측정에 필요한 현금흐름, 할인율, 마진이라는 측정 3요소를 제시하고, 이들 3요소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 보험부채의 가치 측정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인 현금흐름은 명시적이고 시장과 일관된 기대현금흐름이어야 함.<sup>17)</sup>
  - 현금흐름은 마진 등의 요소가 묵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시장에서 모든 가용한 재무정보들을 반영하여 보험회사 자체 경험률보다 덜 주관적이 되도록 요구됨.
    -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전 기간의 현금흐름 추정에는 이견이 존재하나, 2단계 토론서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
  - 또한,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려면 단 하나의 현금흐름 추정치(most likely estimate)가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기대현금흐름(expected cash flows)일 것을 요구
    - 가능한 시나리오를 식별해내고 각 시나리오의 현재가치를 구한 후, 여기에 확률 분포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시나리오별 확률을 적용시켜 불편(unbiased)기대 현금흐름을 산출하도록 함(예시 2. 참조).
- 보험부채의 가치 측정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인 할인율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현금흐름들 간의 경제적 차이, 즉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것임.
  - 2단계 토론서는 투자수익을 반영하지 않고 리스크마진과도 분리된 할인율을 제시
    - 투자이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은 변액보험 등 실적연동형 보험상품처럼 자산가치의 변동이 부채가치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된 자산

15) Durverne, D. and Douit, J. L., "IFRS Phase II and Solvency II: Key Issues and Current Debates", *The Geneva Papers*, 2009. 참조.

16) 본문의 최선추정치(best estimate)는 'unbiased'를 의미. 종종 'most likely'로도 쓰임.

17) DP, 90(a). "explicit, unbiased, market consistent, probability-weighted and current estimates of the contractual cash flows"

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할인율로 부적절함을 지적

- 현금흐름 추정치가 리스크마진 등을 통해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한 현재가치를 구하는데 적용할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risk-free rate)이어야 함.

## 예시 2. 현금흐름 및 할인율 : 보험회계관행과 2단계 토론서의 사례 비교

□ 기존 방식은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현금흐름('most likely')을 최선추정치로 보지만,<sup>18)</sup> 기대현금흐름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므로 기존 방식과 차이를 보임.

- 기존 방식의 현재가치는 613.9인데 반해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742.0임.

### <표 3> 기대현금흐름과 유효이자율 예시

(시장 할인율 5.00%)

| 시나리오     | #1(best) | #2 (most likely) | #3 (worst) |
|----------|----------|------------------|------------|
| 부채 현금흐름  | 500.0    | 1,000.0          | 5,000.0    |
| 만기(년)    | 5        | 10               | 25         |
| 현재가치     | 391.8    | 613.9            | 1,476.5    |
| 발생 확률    | 20%      | 60%              | 20%        |
| 기대현금흐름1) | 742.0    |                  |            |
| 유효이자율2)  | 3.03%    |                  |            |

주: 1) 시나리오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각 시나리오의 확률로 가중 평균함.

2) 명목현금흐름 1,000과 기대현금흐름 742.0이 같아지는 내부수익률(IRR)

자료: 한국회계기준원(KASB), FASB 재무회계 개념체계보고서 제7호 '회계측정에 있어 현금흐름정보와 현재가치의 사용'의 이해, Newsletter Vol. 8, 2001. 예시 수정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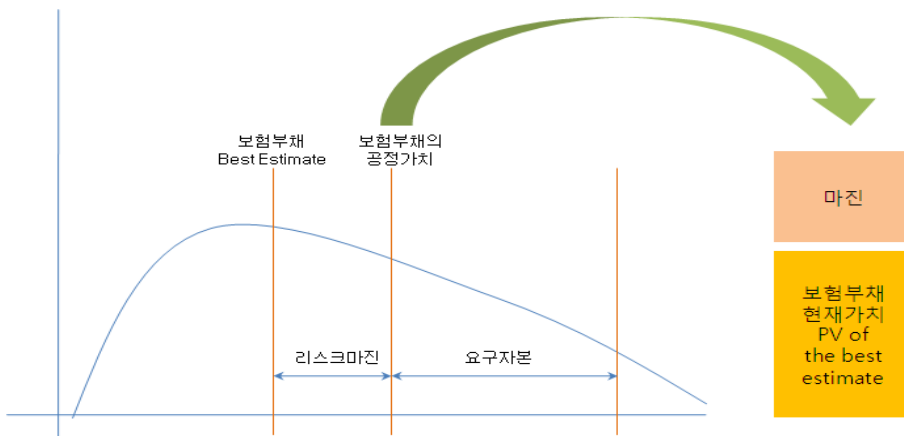
□ <표 3>은 기대현금흐름 742.0과 명목현금흐름 1,000이 같아지는 유효이자율 3.03%가 기존 방식에서 채택할 할인율이 됨을 보여줌.

- 그러나 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다른 부채의 수익률이 3%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는 한, 무위험이자율보다 낮은 3.03%는 해당 부채의 고유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18) 주식 16) 참조.

- 이 때, 리스크마진은 미래현금흐름의 유출을 늘리다가 점차 유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해지율은 현금흐름 유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현금흐름에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 또한, 2단계 토론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의심할 경우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므로 할인율을 신용리스크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
- 보험부채의 가치 측정에 필요한 세 번째 요소인 리스크마진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함.
-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방법에는 유효이자율의 사례처럼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과 현금흐름을 조정한 후 무위험이자율로 할인하는 방법이 있음.
- 2단계 토론서는 전자와 같은 기존의 암묵적 방식 대신 후자의 방법을 따라 보험부채의 최선 추정치 근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대현금흐름을 리스크마진으로 조정하는<sup>19)</sup> 명시적 방식을 제시함.
- 리스크마진의 역할에 대해서는 리스크 인수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견해와 경험치의 변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shock-absorber view)가 있는데, 2단계 토론서는 전자를 선택함.

**<그림 4>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부채의 현재가치와 마진**



19) 따라서 리스크마진은 보험부채의 시장가치 마진(market value margin)으로도 불림.

- 리스크마진은 시장에서 관찰되지 않으므로 요구자본이나 백분위법을 이용하여 측정되며,<sup>20)</sup> 이와 같이 측정된 총 리스크마진의 변동이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됨.

### 3. 2009년 IFRS4 2단계 논의의 변화

2009년 IASB/FASB는 시장의 관점을 중시하는 현행유출가치를 2단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음.

#### 가. 보험산업: 지급능력 및 내재가치 평가에 나타난 보험부채 측정

- 유럽보험감독자기구(CEIOPS)는 Solvency II를 추진하면서 보험부채 평가에 있어서 현행유출가치 방식 등에서 2단계 토론회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 IFRS4와 일정을 달리하면서 이슈별 불일치가 커질 가능성도 보임.
  - Solvency II는 보험부채 평가에 신용등급의 변동 반영, 보험계약 중 저축 및 투자서비스 부분의 인위적 분리를 제안하는 2단계 토론회에 반대 의견을 제시
    - 자기자본규제를 시행하고 보증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산업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nonperformance risk)이 보험회사의 부도위험(default risk)보다 낮으므로 신용등급 반영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임.<sup>21)</sup>
  - Solvency II와 2단계 토론회는 현금흐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단계 토론회는 보험계약자 행동에 따라 좌우되는 미래보험료, 임의적인 배당과 같이 강제되지 않은 현금흐름 등을 부채 평가에서 배제하고 있음.
    - 비용에서도 보험회사의 실제 비용이 아닌 가상의 시장참가자 개념에 근거한 이론적 비용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 CFO 포럼이 내재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원칙을 공표함으로써 내재가치가 보험부채 측정의 국제기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0) 시장에서는 요구자본방식이 선호되고 있음. 요구자본과 백분위법에 대해서는 이경희,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IBR, 제27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8. 참조

21) Kennedy, G., "Creating a New Accounting Standard", *Risk Management*, 2008.

- CFO포럼의 표준 제시와 함께 내재가치방식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보험부채에 대하여 1단계 IFRS4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음.
- 내재가치 평가는 현금흐름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2단계 토론서와 달리 미래의 보험료와 배당 등 모든 현금흐름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평가됨.
  - 다만, 단일 현금흐름 추정치와 무위험이자율이 리스크마진으로 조정된 할인율(risk discount rate)을 이용하여 시장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음.
- 최근의 대표적 내재가치 평가방식에는 시뮬레이션(real world)방식과 확률모형을 이용하는 MCEV(marker-consistent embedded value)방식이 있음.
  - 시장데이터를 사용하고 리스크마진을 포함하는 MCEV는 2단계 토론서와 유사하며, CFO 포럼은 2010년 MCEV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임.

#### 나. IASB/FASB: 시장의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관점으로 전환

- 2009년 2월 IASB/FASB는 2단계 토론서의 공정가치 측정의 기본 틀인 현행유출가치를 논의에서 배제함.
  - IASB와 FASB는 유통시장에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적은 보험부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유출가치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함.
    - 그동안 IASB는 가상의 시장참가자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부채 측정 기준을 제시
  - 따라서 이번 현행유출가치의 폐기는 관찰할 수 없는 가상의 시장참가자가 아닌 보험회사의 관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IASB와 FASB는 3요소에 의한 측정, 가용한 모든 정보의 반영, 상품판매 시 이익인식 금지(no gain at issue)<sup>22)</sup>의 3원칙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고 있음.
  - IASB와 FASB는 부채 측정의 새로운 틀로서 IAS37<sup>23)</sup>에서 제시된 평가방식(이하 IAS37모형)과 현행이행가치(CFV: current fulfillment value) 방식을 논의 중임.
    - IAS37은 부채에 대한 최선추정치는 관련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할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

22) IASB/FASB의 수익인식회계기준 프로젝트의 잠정 결론에 따른 것임.

23) IAS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가치 측정 효과가 크지 않은 손해보험에 대해서 미경과보험료방식 (UPM: unearned premium model)을<sup>24)</sup> 따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 중임.

○ 한편, 그동안 보험산업에서 지적되어 왔던 상품판매와 동시에 이익이 인식되는 (positive day one difference or day one gain) 문제에 대해서 초기 이익 인식의 방식을 위한 세부 대안 도출에서는 IASB와 FASB가 이견을 보임.

□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FASB는 2단계 토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시된<sup>25)</sup> 현행이행가치(CFV)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IASB는 IAS37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평가모형을 선호함.

○ CFV모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까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청산개념(settlement value approach)에서 보험부채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임.

- 이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측정에서 제기된 신용등급의 반영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IAS37모형은 현재의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기업이 합리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보험부채의 가치를 정의하고, 사업비 지급 등에 따른 손익(day one difference)을 기타마진(residual margin)에서 반영함.

- IAS37은 계약에 의한 부채는 물론 소송, 자가보험 등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형태의 부채도 포함하고 있으며, 부채의 가치를 판매자 입장에서 측정

○ CFV모형과 IAS37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진의 명시적 고려 여부이며, 이는 IAS37이 기존의 현행유출가치에 보다 근접한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음.

- IAS37은 마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고려하나, CFV 모형은 복합마진으로만 산출하여 리스크마진 등을 암묵적으로 고려함(<그림 5> 참조).

- IAS37모형은 부채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리스크마진(risk margin), 서비스 제공에서 기대되는 이익을 반영하는 서비스마진(service margin), 순보

---

24) 이 경우 공정가치(현재가치) 측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IFRS4 1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채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25) CFO 포럼과 CRO 포럼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협료에 대한 초기 조정항목으로서의 기타마진(residual margin)을 명시적으로 구분함.

- 그러나 IAS37모형과 CFV모형 모두 마진이 어떻게 수익으로 인식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5> IASB/FASB의 새로운 대안 논의



자료: Deloitte, "Filing for the Divorce?" Insurance Accounting Newsletter, Issue 7, 2009.

- 한편, IASB와 FASB는 신계약비에 대한 당기비용 처리 원칙에는 동의하나,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신계약비가 다르게 지출되었을 경우 초과 지출된 신계약비의 처리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마진 논의와 연계되어 있음.
- FASB는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서부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동일한 리스크”에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판매채널 등의 차이에 따른 사업비 차이를 조정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봄.
  -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영업보험료를 초과하여 지출한 신계약비는 손실(day one loss)로 인식되어야 함.

- 반면, IASB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초과 지출된 신계약비는 영업보험료에 합산하여 모두 수익으로 인식되며, 초과 지출된 부분을 기타마진에 반영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함.
- 초과 지출된 금액을 한도로 판매와 동시에 이득(day one gain)을 계상하는 방식임.
- 이 경우 이익 인식의 형태는 초기에는 현재의 보험회계관행과 유사하게, 후기에는 현행유출가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그림 3> 참조).

#### 4. 향후 전망

IFRS4 2단계 논의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로서 현재가치를 매기마다 일관되게 측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상의 시장참가자의 기대 대신 보험회사의 관점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환됨으로써 향후 논의의 진전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됨.

- 2008년 FASB가 IFRS4 2단계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은 IASB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 제고(convergence) 노력은 물론 IFRS4 2단계 기준의 전망에도 좋은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IFRS4 2단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FASB의 공동 참여는 2009년말이나 최소한 2010년초에 2단계 초안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더구나 IASB/FASB는 2단계 토론서에서 정한 측정 3요소와 가용한 시장정보의 반영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행유출가치의 틀을 바꾸는 변화를 시도하여 보험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
- IFRS4 2단계 논의가 보험권에 보다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향후 6개월 내에 기준서 초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보험회사들이 IFRS4를 준비하면서 부담할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보험부채를 제3자에게 이전한다는 기존 틀을 배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대안은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구도로서,

- 이는 그동안 금기시되어 온 보험회사 경험치(entity-specific value)의 반영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보험권에서 제기된 이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을 보임.
- 물론, 현재 검토되고 있는 IAS37모형이나 CFV모형 중 어느 모형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들 대안이 측정 3요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09/2010 논의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Solvency II의 보험부채 측정 논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임.